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비엔비자산운용(주)(이하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공개합니다.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제55조에 의거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컴플라이언스팀으로 지정하고 총괄하는 자로 준법감시인으로 지정함(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제56조에 의거하여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으로 대표이사과 기타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의 등기임원을 지정함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1.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 ①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내부통제기준 제55조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 ①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② 판매회사(투자자 포함) 및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5영업일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③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 ① 고유자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및 투자자문업무 포함, 이하 동일) 운용업무
 ②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중 정보교류통제를 총괄하는자가 부서 또는 팀 단위의 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정보보호가 필요하다고 정보교류통제를 총괄하는자가 인정하는 경우

2.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① 고유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하는 운용 정보
 ② 집합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 자산의 구성내역 등 운용 정보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회사의 금융투자업 등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 판단

- ①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②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③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④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⑤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⑥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⑦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⑧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⑨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⑩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⑪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⑫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이해상충 유형	내용	대응방안
임직원의 개인투자	임직원의 사적 개인투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및 사후신고 절차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제공 및 수령하는 행위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 확인
의결권의 행사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준수 이해상충 및 투자자보호에 반하는 행사 금지
대외활동	회사업무 이외의 외부활동	회사와 투자자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준법감시인의 승인
겸직활동	임직원의 겸직활동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사전승인
중개회사의 선정	집합투자재산 매매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준수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 수립 및 점검
운용지시 (사전자산배분)	여러 집합투자기구(계좌)를 위한 통합 주문	사전자산배분규정 준수 운용역과 트레이더 분리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산거래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정보의 제공 시 준법감시인 사전보고, 회의통신 기록대장 작성

* 상기 이해상충 유형 및 대응방안은 예시이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항상 투자자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V.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1. 고객이익 우선

-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 간 또는 고객과 고객 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 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